

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5항중 “위원장은” 다음 “안건의 내용에 따라”를, 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” 다음에 “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”를 각각 삽입한다.

제3조중 제9호, 제18호, 제21호, 제26호, 제27호를 삭제하고 제33호, 제34호를 각각 제34호, 제35호로 하고 동조 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.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

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제4조 ⑤위원회는 재적위원(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범위를 위원회의 재적위원으로 본다)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 2 조(구성) ①~④ (생략)	제 2 조(구성) ①~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.	⑤ 위원장은 안전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.
제 3 조(결정사항) (생략)	제 3 조(결정사항) (현행과 같음)
1~8 (생략)	1~8 (현행과 같음)
9. <u>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</u>	9. (삭제)
10~17. (생략)	10~17. (현행과 같음)
18. <u>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</u>	18. (삭제)
19~20. (생략)	19~20. (현행과 같음)
21. <u>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</u>	21. (삭제)
22~25. (생략)	22~25. (현행과 같음)
26. <u>중요한 복합민원 종합조정심의</u>	26. (삭제)
27. <u>중요한 불허민원 심의</u>	27. (삭제)
28~32. (생략)	28~32. (현행과 같음)
(신설)	33. <u>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</u>
33~34. (생략)	34~35. (현행과 같음)
제 4 조(회의) ①~④ (생략)	제 4 조(회의) ①~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	⑤ 위원회는 재적위원(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범위를 위원회의 재적위원으로 본다)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